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2
----------	------

제출일자 : 2020. 4.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달성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사회적경제 육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 (1) 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기능
 - (2) 운영방법 및 경비 지원
- 나. 사회적경제부문 포상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 (3)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11. ~ 2020. 3.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3(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u> <u>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u> <u>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u> <u>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u> <u>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u> <u>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u> <u>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u> <u>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u> <u>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신 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3(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를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